

## 중국 식품안전업무 강화결정

자 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중국에서는 최근 발생한 바 있는 일련의 식품안전 사건(식품첨가물 과다 사용, 저질분유로 인한 유아 사망, 공업용 메틸알코올로 제조된 술로 인한 사망 등)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야기되자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지시로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의 주관 하에 위생부, 농업부, 공상관리총국 등 관계부서 공동으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안전의 국가 정책상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국무원은 지난 9.1(수) 구체적인 목표와 단기적으로 수행할 중점업무 및 향후 추진대책을 골자로 하는 “식품안전업무 강화 결정”이란 식품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각 성·시·자치구에 유효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한 바, 관심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은 많은 국민의 신체건강 및 생명의 안전과 관계되고,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 안정에도 관계되며, 정부 및 국가의 이미지와도 연관되는 것이다. 유사이래, 당 중앙·국무원은 식품안전을 매우 중요시 하였으며,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가짜·위조·불량식품 등을 제조 판매하여 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에 대해, 시장경제질서의 정도와 규범으로 중점을 두어 다스리도록 하고, 식품안전업무를 강화시키는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였다. 각 지역·각 부서는 다양한 업무로써 일정한 효과를 일으킬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가짜·위조·불량식품을 생산 판매하는 사안은 다소 수그러지고 식품안전은 점차 호전되는 추세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안전문제는 여전히 심각하고, 종자양식·생

산가공·시장유통·음식소비 등의 방면에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돌출하고 있으며, 식품안전 관리체제·법제도·표준 등의 방면에 나타난 결점과, 지방보호·법위반·법집행이 엄정하지 못함·감독관리의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발생하였다. 중국식품의 신용과 명예를 회복·향상하기 위해, 국민의 신체건강과 생명의 안전을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 국무원은 명확한 효과가 있는 정책 조치를 결정하여, 식품안전업무를 한 단계 강화시켜야 한다.

### 1. 지도사상·업무원칙 및 목표

#### (1) 지도사상과 업무원칙

덩샤오핑(鄧小平) 이론과 “삼개대표(三個代表)” 중요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고, 당의 16대

정신을 성실하게 관찰하며, 인본주의·국민정치의 사상을 견고히 수립하고, 인민정부의 직책을 전면적으로 이행하며, 식품안전업무를 특별한 지위에 놓고, 중점적으로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한다. “전국통일지도자·지방정부 책임자·부서지도자의 협조·각 방의 연합행동”이라는 식품안전업무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상호협동·협조를 강화하며 책임을 구체화하여 법의 집행력을 가속화시킨다; 집중적인 정비 및 제도 건설을 지지하고, 엄격한 법의 집행과 과학적 관리·불량모조품 방지와 우수제품을 지원하고, 이렇게 하여 중점을 더욱 두드러지도록 하여 전문적인 항목으로 놓아두고 중요시한다. 동시에, 일상적인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식품안전체계와 신용을 위반한 것에 대한 징계메커니즘을 건립하고 기업이 성실하게 법을 준수하도록 인도한다; 여론의 감독을 강화하고, 전면적인 선전 역할을 가속화시키며, 사회 감독을 강화하여, 국민의 식품안전과 신체건강을 보장한다.

## (2) 업무 목표

어렵고 세밀한 작업을 통하여, 식품생산 판매 질서를 확실하게 호전되도록 하고 생산·판매되는 가짜불량식품과 유해한 독성 식품이 법을 위반하는 범죄활동을 억제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큰 사건에 대해서는 제때에 조사 처리하며, 식품안전사고를 큰 폭으로 감소시키고 국민의 식품소비 안전감을 증가시켜서 중국 식품의 신용과 명성을 회복하고 향상시킨다. 이것을 기본으로 하여, 해이해 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식품안전법률법규와 감독관리체제를 더욱 완벽하게 개선하며, 표준체계·검사검측체계·신용체계를 더욱 과학적인 효과를 내도록 추구하고, 업종협회와 중간조직의 작용이 충분히 발휘되며 기업의 안

전책임과 의식이 한층 더 강화되고, 식품산업이 계속적으로 건전하며 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식품안전과 건강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지속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게 한다.

## 2. 단기작업의 중점

### (1) 식품생산가공업을 힘써 정돈하고, 식품공업수준을 확실히 향상시킨다.

식품의 전문적인 항목정비를 통하여 확정된 중점식품에 따라, 무위생허가증·무영업허가증·무생산허가증으로 생산판매를 한 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조사를 하고 생산조건을 구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단호하게 단속한다; 식품품질안전시장진입제도(食品品質安全市場准入制度)의 엄격한 실시, 기업생산조건의 엄격한 심사, 엄격한 표준에 따른 조직 생산, 엄격한 제품출고 검사, 금년에 기본적으로 완성된 육류제품(肉制品)·유제품(乳製品)·음료·조미품·냉동식품·라면·비스킷·통조림·급속냉동된쌀·면식품·팽창식품등 10가지 종류의 제품에 대해 식품품질안전시장진입작업을 실시하고 그 나머지 13가지 종류에 대해 시장진입 작업을 시작한다; 생산가공기업에 대한 감시 강화, 생산기업에 대한 순찰·방문·연도심사·감독추출검사 등의 관리감시제도 실시; 기업법인은 식품안전의 행위에 대한 첫번째 책임자로서의 책임을 강화한다; 신자원식품·식품첨가제와 식품포장재료 등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강화하고 첨가제 남용·불법 식원료를 사용하여 생산가공한 식품·금지약물을 첨가한 보건식품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재제한다.

식품생산가공업의 정돈은 지방정부가 통일적

으로 조직하여 실시한다. 정돈을 통하여 우수기업을 보조하고, 제품품질안전조건을 구비하지 않은 식품생산가공기업을 문을 닫게 하고, 가짜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위법 범죄분자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한다.

**(2) 농업 투입품에 대한 전문적인 정비항목을 강화하여, 근본적인 농산품오염을 방지한다.**

앞으로 계속해서 “무공해식품행동계획”을 추진하고, 농약잔류·가축·목축제품에 대한 금지약물 남용·수산물의 약물잔류에 대해 전문적인 정비항목을 철저히 강화하고, 농민에게 비료·농약·수약(獸藥)·사료첨가제와 동식물성장호르몬등의 지식을 보급하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저잔류고효율 농약·수약(獸藥)과 무오염첨가제를 널리 보급해서 사용하게 하고, 재배·양식 행위를 규범화한다: 통일적으로 규범된 농업제품품질안전표준체계를 건립하고, 농업제품 품질안전규정감시측정제도와 농업제품 품질안전추소(追溯)제도를 건립하여 농업제품 산지환경·농업투입품과 농업제품 품질 안전 상황에 대한 감시측정을 촉진시킨다: 무공해농업제품 표준화 생산 종합 시범구역·양식소구역·시범농장·규정되지 않은 동물역병구역과 수출제품생산기지에 대한 건설을 추진하고 농업제품과 식품인증작업에 대한 촉진을 지지하며, “회사+기지”의 모형을 널리 보급시키고, 고독극물·고잔류농업투입품의 사용금지·한계사용과 도태를 가속화시킨다.

**(3) 약한부문에 전력투구하고, 식품유통·소비영역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 단계 강화시킨다.**

“녹색소비 제창·녹색시장 배양·녹색통로 개척”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삼녹이정(三綠二程)”을 철저히 실시하고, 현대적 유통조직방식과 판매방식을 주도로 하여 체인판매와 물류배송을 크게 발전 시킨다: 위탁판매기업은 구체적으로 들어오는 화물에 대해 검사검수·증명과 영수증에 대한 요구·판매장과 품질약속제도의 추진뿐만 아니라 시장설립자가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제도로, “공장의 연계(工場·鉤)”·“장소의 연계(場地·鉤)”등의 효과적인 방법을 지속적으로 널리 추진한다: 전면적으로 구체적인 시장 순찰제도로써, 추출검사 감독과 식품위생규정감시측정제도를 완벽하게 하여 불합격제품에 대한 시장퇴출·소환·소각·공표제도를 엄격하게 실시한다: 음식업·식당에 식품위생감독량분급관리제도의 실시를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식품오염 감시측정과 식원성질병(食源性疾病)감시측정체계 건설을 완벽하게 강화시킨다: 가축 도살 업종 관리를 강화하여, 지방을 봉쇄 다파하고, 품질의 우수성·신용과 명예가 좋고·상표지명도가 높은 식품을 전국에 유통시킨다: 사회식품가공유통서비스체계를 건전하게 한다. 식품안전표식과 포장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의 가짜포장·가짜표식·가짜상표 인쇄품의 정비에 전력을 집중시킨다.

**(4) 어린이 및 농촌식품시장 정비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며, 미성년·농민과 저소득인의 이익을 확실히 보호한다.**

종합적인 정책을 채택하여 가짜불량어린이식품의 제조·판매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해야 한다. 감시관리의 중점과 작업 중심을 아래로 이동하면, 농촌시장의 감시관리를 강화하고 사회적으로 분산·성향(城鄉)의 결합부와 촌진(村鎮)의

각종식품 도매시장·집무시장<sup>1)</sup>·개인상인·소규모공장·소규모식품점·소규모식당에 대한 감시관리에대한 역량을 가속화하고 음식점·학교식당과 건축현장의 식당에 대한 관리감독 검사를 강화한다.

**(5) 큰 사건·중대 사건을 법률에 입각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한 범죄자들을 두렵게 한다.**

식품안전의 큰 사건·중대 사건은 역량을 집중하여 즉시 처리하고, 법률에 입각하여 위법한 범죄자들과 주모자들을 엄중히 처벌한다. 발생률이 높고·중대 사건을 오래 끌고 해결하지 못한 지역 및 기관들은 상급정부와 관련 행정법집행·사법부서가 역량을 모아 직접 조사하고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숙하게 추궁한다. 중대한 안전의 조사결과는 적시에 사회에 공포한다.

**(6) 식품안전을 선전하고, 서비스를 발전시킨다.**

당 중앙·국무원은 식품안전의 정신을 크게 선전하기 위하여 각 지역·각 관련부서는 식품안전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보도하도록 하며, 법률법규와 식품안전지식을 선전하고 계속적으로 식품안전 방면의 위법 범죄행위를 폭로·노출하며, 적시에 보도하고 채택하였던 시책들과 그 효과를 추적한다; 보도는 품질·신용추구를 중시하는 것으로, 우수한 품질의 식품·우수브랜드 및 우수기업을 힘써 선전하고, 군중의 소비심리를 증가시키며, 중국의 식품 신용을 향상시킨다; 대외적으로 중국의 식품관리업무 및 그 효과에

대하여 적극 선전한다. 적시에 《중국식품안전현황》백서를 편집한다.

각 지역·각 관련부서는 확실하게 전력투구해야 하고, 임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며, “책임추궁제”를 실행하고, 각 종 중점사업의 단계적인 진행을 확인한다. 식품관리부서는 식품안전관리의 중대 사고를 조사 처리하는 경우에 종합적 관리감독·조직협조 및 조직전개를 한층 더 강화하여야 하고, 식품안전의 종합적 관리업무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3. 중요 대책**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어렵고도 막중한 임무이며, 반드시 달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부차적인 것과 근본적인 것을 함께 고치며, 근본을 치료하도록 애써야 할 것이고, 건전한 관리제도 및 장기적인 메커니즘을 건립하도록 한다.

**(1) 관련 관리부서에 한층 더 순응하도록 책임진다.**

1개의 관리부서는 1개의 부서가 관리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분할적 관리를 위주로 하고 품종관리를 차선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식품안전관리의 직능을 한층 더 순종하도록 하는 책임을 명확히 한다. 농업부서는 초급농산물 생산부문의 관리를 책임지고; 품질검사부서는 식품생산가공부문의 관리를 책임지며, 현재 위생부서가 담당하는 식품생산가공 부문의 위생관리책무를 품질검사부서로 귀속시키고; 공상부서는 식품유통부문의 관리를 책임지며; 위생부서는 푸드·음

1) 집무시장(集貨市場): 정기시장에서 행해지는 거래 무역 시장

료·식당 등 소비 부문의 관리를 책임지고; 식약품관리부서는 식품안전의 종합적인 관리감독·협조도모 및 법률조직에 대한 중대한 사고를 조사 처리한다. 직권일치의 원칙에 따라, 식품안전 관리책임제도(食品安全監管責任制)와 책임추궁제도(責任追究制)를 제정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편성회의(中央編辦會)와 관련 부서가 확실하게 조직한다. 이번 직책조정은 임무가 막중하므로, 각 관련부서가 대체의 흐름에서 출발하여, 열성적이고 세밀하게 각 항목의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2005년 1월 1일에 시행할 수 있도록 순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농업·발전개혁 및 상무 등 부서는 각자 직책에 따라, 종자양식·식품가공·유통·소비부문의 관리업무를 진행한다. 업종협회(行業協會)와 중개(仲介)조직의 작용을 한층 더 강화한다.

**(2) 지방정부의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

지방의 각급 인민정부는 현지의 식품안전에 대한 총 책임을 지며, 본 지역의 식품안전관리 및 정비업무를 통일적으로 지도하고 협조해야 한다. 건전한 식품안전조직 협조메커니즘을 건설하기 위하여, 식품안전 전문정비 및 전면적인 식품가공업 정돈을 통일적으로 조직 진행한다; 관련 법률집행 부서와의 협조와 조화를 한층 더 강화하고, 종합적인 법률집행·연합적 법률집행 및 일상적 관리를 강화하며, 특히 법적으로 관리감독 중인 불법행위와 소동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책임제도와 책임추궁제도를 철저하게 실시하고, 직접책임자와 관련 부책임자의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며, 각자의 책임에 맡도록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지방보호주의를 단호히 극복하고, 대세의 의식을 강화하며, 어떠한 형식으로도 법률집행을 방해해서는 안되고, 결코 불법기업과 불법분자의 “보호우산(保護傘<sup>2)</sup>)”이 되어서는 안 된다.

**(3) 말단 법률집행인원 건설을 강화한다.**

말단 식품안전관리는 기초와 중점이 되는 것으로, 식품안전관리의 법률법규와 각 종 업무를 실제로 배치할 수 있는 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법률집행인원의 사상건설·업무건설 및 태도건설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법규 훈련을 강화하고, 인원의 전체적인 소양과 법률입각행정능력을 향상시키고, 엄격한 법률집행·공정한 집행·문명적 집행을 진행한다; 말단 법률집행인원의 힘을 충실히 하고, 인원의 채용을 엄격히 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법률기율을 엄숙히 한다; 지방정부는 법률집행장비와 검사측정기술 조건을 확실히 개선하고, 사무비용과 추출검사관리비용 등 경비를 보장한다.

**(4) 식품안전법률법규 및 부서 규장을 개선한다.**

국무원은 시급히 《식품위생법》과 《공업제품생산허가증관리방침》을 법률로 조직하고, 《농산품품질안전법(원고심사를 송부)》의 심의 조사 작업을 조속히 진행한다. 상무부는 《돼지도살관리방침》을 연구제정한다. 농업부·상무부·위생부·공상총국·품질총국 등 부서는 직책조정에 따라, 식품안전 방면의 부서 규장등을 신속히 정리·

2) 보호우산(保護傘): (직원이나 기타의 조건으로) 다른 사람을 비호하는 사람.

개정하도록 하여, 2004년 말 이전에 완성하도록 한다.

**(5) 건전한 식품안전표준 및 검사측정체계 건립한다.**

식품안전과 관련한 제품 및 위생표준을 조속히 정리하고, 식품안전표준체계를 구축하며, 품질검사총국회의(質檢總局會)는 발전개혁위원회·농업부·위생부·상무부·식약품관리감독국 등 부서와 함께, 제정의견을 제출하고 의견을 수정하고 긴밀하게 실시한다. 농업·품질검사·위생·상무 등 부서 측정기구의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고, 검사측정체계를 개선하며, 품질자격을 엄격하게 진행하고, 점차 사회를 향하여, 자원의 공동 향유를 실현하고, 중복 건설을 하지 않는다; 식품검사측정체계 건설은 품질검사총국회의와 농업부·위생부·상무부·공상총국 등 부서가 함께 연구하여 구체적 의견을 제출한다.

**(6) 식품안전신용체계 및 정보화건설을 조속히 한다.**

식품생산판매기업의 신용건설 강화를 핵심으로 하고, 정부의 관리감독·업체자체 및 사회의 관리감독을 통해, 신용을 어긴 경우의 징계를 강화하고, 식품안전제도의 규범·관리서비스 '시스템과 운영메커니즘건설'을 종합적으로 건설한다. 계속해서 시아먼(廈門)·랴오위엔(遼源)·다칭(大慶)·창더(常德)·인추안(銀川) 5개 도시를 건설하여, 고기류·양식류·아동식품 등 3개 업종의 식품안전신용건설을 시점으로, 건전한 식품

생산·판매기업의 품질서류 및 식품안전관리신용서류를 제작하여, 식품생산판매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한다. 5년 전후의 시간동안 열심히 진행하여, 점차 중국 식품안전신용체계의 기본 구조와 운영메커니즘을 건설한다.

식품안전정보관리 및 종합적인 이용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서 간의 정보교류 채널을 구축하고, 상호 의사교류와 자원공유를 실현한다. 농업부서는 관련 초급농산품의 농약잔유·가축약품잔류 등의 검사측정정보를 공포한다. 품질검사·공상·위생 및 식약품관리 4개 부서가 연합하여 식품품질관리감독검사정보를 시장에 발표한다. 식약품관리국은 일괄수집·신속한 전달·분석정리를 책임지고, 정해진 기한에 사회에 식품안전 종합정보를 반포한다. 활발한 정부검측 및 통보 네트워크체계의 건설을 위해, 자춤 통일적이고 과학적인 식품안전정보평가 및 조기경보지표체계를 형성하고, 즉시 식품안전의 형세를 연구 분석하며, 식품안전문제에 대한 조기발견·조기예방·조기치료·조기해결을 실시한다. 식품약품관리감독국은 관련부서와 함께, 《식품안전관리정보 반포임시관리방침》을 제정하고, 유제품과 채소류 두 가지 품종을 선택하여 정보반포를 규범화하는 시점으로 한다.

국무원은 식품약품시행관리국(食品葯措監管局)이 관련부서와 함께 본 결정의 충실한 수행을 처리하도록 책임지며, 2005년 1월 1일 이전에 식품안전작업정합검사를 1차 조직 진행하고, 적시에 검사상황을 국무원에 보고하도록 한다.